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4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 : 윤준병 • 주철현 • 박민규

황명선 • 허종식 • 정동영

이성윤ㆍ허 영ㆍ김윤덕

조계원 • 박희승 • 송옥주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

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제1항·제2항 신설).
- 나.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함(안 제542조의7제1항).
- 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42조의12제2항).
-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부분)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본문 중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을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가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를 "그의"로 한다.

제3편제4장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 集하여야 한다.

<신 설>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 례) ①・② (생략)
 -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 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개 아 정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 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 가-----본점소재지나 인접 한 곳에 소집하여야----.
 -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 로 총회를 개최한다.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 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 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상장회사는 제382 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배제할 수 없 다. <단서 삭제>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 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 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4	(현	행과	같-	음)				
제	542	조º	120	감시	위육	일호	의	구	성
	등)	1	(현	행과	· 같	음)			
	2								
						<u>7</u>	감사위	원	회
	<u>위</u> 원	<u>텔이</u>	되는	<u>-</u> 0	기사	를	다른	٥]	사
	들고	가 툰	브리ㅎ	- 여	선역	임	또는	해	임
	하ㅇ	<u> </u>		<u><</u>	(단시	ने /	삭제>	> -	

③
감사위원회위원은

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 ⑧ (생 략) <신 설>

•
4
<u>그의</u>
· ⑤ ~ ⑧ (현행과 같음)
<u> </u>
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
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 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 다.

-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 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 다.
- 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 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 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은영등)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 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 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 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 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 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 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6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 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